

영국비교법 연구소

단기 체류 연구를 마치며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실 연구위원)

I. 들어가며

2018년 11월 COP24 회의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하 이행규칙)’이 통과됨으로써, 파리협정에 토대를 둔 신기후체제로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서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제 규범 연구’를 통해서 국제 기후 규범 체계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행규칙의 경우 사전 당사국 회의, 워킹그룹(Working Group) 미팅, 전문가 회의 등에서 이행규칙 초안(Draft), 수정안(Revised Paper),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Opinion) 등 층위별 담론 형성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 바, ‘파리협약 이행규칙’에 대한 분석적 이해 및 ‘파리협약’과의 통합적 맥락에서의 신기후체제 규범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협약’, ‘이행규칙’ 이외에 이와 같은 층위별 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었다.

2015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 후속 규범인 ‘이행규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담론이 활발히 형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런던)은 다양한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화 등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와 담론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행규칙’ 합의 전·후 다양한 층위의 연구 및 담론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 대학가인 홀본 지역에 위치한 영국 비교법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IICL”)에서의 단기 체류 연구를 통해 수시보고서 「파리협정 이행규칙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제 규범연구」의 질적 함양을 꾀하고 국내 관련 연구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BIICL 체류

영국 도심 한복판인 홀본 지역의 러셀스퀘어(Russell Square)에 위치한 영국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IICL”)는 1958년에 설립된 이래, 국제법과 비교법 연구 분야에서 영국 및 유럽권에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BIICL 건물 로비



BIICL 발간 간행물(출처: <https://www.biicl.org/iclq>)



윤인숙 연구위원, Spyros M. Maniatis 교수(BIICL director), Jan van Zyl Smit 박사(BIICL 연구원) (왼쪽부터)

영국 외무성 등 정부 부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 기관 혹은 대학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 단체이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흔치않은 성격의 독립적인 연구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와 사업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나 민간 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조달받지 않고, 개인 및 단체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흔치 않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국제 공법 프로그램Public International Law Programme, 국제 사법 프로그램Private International Law Programme, 유럽법 프로그램European Law Programme, 비교법 프로그램Comparative Law Programme을 운영을 통해 국제 공법, 국제 사법, 비교법 및 유럽법에 관련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념적 기반Conceptual Foundation을 기초로 한 실용적인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 관행의 사례와 정책 및 법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11년 12월 선임연구원인 Kristin Hausler박사가 영연방 법률 공보Commonwealth Law Bulletin에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가 안보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는, 본 논문은 2011년 7월에 시드니에서 열렸던 영연방 법무장관 회의Commonwealth Law Minister에서 성공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Lara Blecher, Kristin Hausler, Robert McCorquodale 및 프로젝트 외부 고문인 Malcolm Forster등으로 구성된 BIICL 기후변화 프로젝트팀은 자금 자원Subsistence Resources에 대한 접근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Migration와 관련하여, 영연방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체계Legal Frameworks의 적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2012년 6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8월에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에 보고서요약서 포함을 제출하였다. 제도적 권고사항을 제시한 동 보고서는 그 후에 2013년 9월, 영연방 고위 법무관 회의Commonwealth Senior Law Officials Meeting에도 제출되었고 이 회의 후에, BIICL은 동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2014년 5월에 보츠와나Botswana에서 개최된 영연방 법무장관 회의Commonwealth Law Ministers Meeting에 제출하기도 했다.

BIICL에 머무는 동안 본인은 기후변화 분야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Kristin Hausler 박사 등과의 수차례 걸친 면담 및 미팅을 통해 유럽 연합과 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적·제도적 수단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BIICL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에 대해 정부와 민간에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자문을 제출하고자 수행했던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최근 Brexit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기후, 환경 등 주요한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예전만 못하다는 연구진들의 우려인데, Kristin Hausler 박사는 특히 BIICL도 몇 년동안 기후변화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매주 열리는 전체 스태프 미팅·본인도 체류 기간 동안 매주 스태프 미팅에 참여 할 수 있었다-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한국 법제 연구원과 같이 BIICL도 기후변화연구의 지속적인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무적인 일은, 본인이 BIICL에서의 3주에 걸친 체류 연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얼마 뒤에, BIICL 측으로부터 기후변화법을 연구하는 신입 연구진을 충원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에 대한 제도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BIICL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다.

BIICL은 단지 기후변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법제 분야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교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은 체류 기간 동안 주 1회 개최되는 스태프 미팅 참석뿐만 아니라 BIICL측의 마련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Director인 Spyros M. Maniatis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진들이 특히 60여 명의 법제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법제도에 반영된다는 점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III. Grantham 연구소 방문

BIICL이 위치한 홀본 지역의 러셀 스퀘어는 LSE, London City University 등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학·연구 중심 지역이다. LSE 캠퍼스에 자리잡은 Grantham 기후변화·환경 연구소는 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기후 변화와 환경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 및 훈련을 위한 세계 선도적 기관을 목적으로, 2008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가 설립한 기관이다. 기후변화연구로는 영국뿐만 아니라 EU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 중의 한 곳으로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거버넌스, 제도뿐만 아니라 행동변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자원, 대중 교육 등 여러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연구 주요 성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기후 변화 법 데이터베이스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Database’¹와 ‘세계 기후 변화 소송법 데이터베이스 Climate Change Litigation of the World Database’ 프로젝트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Grantham Institute와 Sabin Center가 수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Grantham Institute와 GLOBE International 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기후 법제 연구 Climate Legislation Studies에 관한 협업 포함-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법규 및 전 세계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 기후 관련 법,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과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에너지, 운송, 토지 이용 및 기후 회복력 climate resilience 등의 분야에서

1.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climate-change-laws-of-the-world/> 참조

기후 정책의 관련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25개국의 기후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수사 기관에 대해서, 기후 변화의 과학 및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 또는 노력에 관련한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위의 '세계 기후 변화 법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Alina Avechenkova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법제와 소송 데이터베이스 사업 진행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축적 및 이의 분석을 통해 각국 기후변화 법제의 내용과 특징 파악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법제도화에 있어서 글로벌 경향성과 지역적 경향성, 향후 기후변화 소송 전망 등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제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외에 인상 깊었던 점은 Grantham Workshop, Conference, Public Lectures 등 다양한 행사명으로 진행되는 강연 및 세미나들이다. 성격에 따라 연구소 내부 스태프 혹은 LSE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세미나들이 있고 Public Lectures나 Conference처럼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도 있다. 기후변화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소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Grantham 강연 및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의식과 수준 높은 발표 내용 및 토론으로 관계자들에게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운 좋게도 본인은 체류 연구 기간 동안 개최된 Grantham Workshop에 참석할 수 있었다. 탄소 가격이 영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Carbon pricing, compensation, and competitiveness; Lessons from UK manufacturing' workshop을 통해서 배출감소를 위한 동기 부여와 영국 내 산업 보호 간의 잠재적인 균형을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IV. 나아가며

기후변화 정책과 법제에 있어서 앞서가는 영국의 연구 풍토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법제 연구의 다양한 주제 의식과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한 법제 연구 방법론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BIICL(런던)에서의 단기체류 연구는 본인에게 향후 법제연구원 생활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 진일보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